

한림법학원 김남훈 변호사입니다. 2026년 1월 시행된 15회 민사법 사례형 간략해설입니다.

실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강사의 시각에서 개인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사례형 문제에 대하여, 12회 변시를 난이도 1로 보면, 13회 변시는 난이도 2, 14회 변시는 난이도 3, 15회 변시는 14회 변시와 유사한 난이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소멸시효의 쟁점을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민사집행법도 좀더 신경써서 공부를 해야합니다. 14회에는 부동산등기법의 지식을 전제로 하는 판례 쟁점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변호사시험의 특성상, 민사재판실무에서 다루는 실무과목의 쟁점은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법에 출제된 창고업과 같은 불의타 쟁점은 조문을 잘 정리해서 쓰라는 의도로 출제하신 것 같으니, 불의타 쟁점까지 공부량을 무한정 늘리는 것이 아니라 조문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매년 조금씩 출제경향이 변동되어도 ‘최근 판례에 기초한 문제’와 ‘중요 쟁점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를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큰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매년 조금씩 변하는 출제경향에 신경쓰기 보다는 민사법의 중요 쟁점에 대하여 확립된 일반론과 판례의 법리를 숙지하고 최근 판례를 추가하여 학습한다는 전제하에 자신에게 맞는 교재와 학습방법을 찾아서 공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체력적,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5일 간의 시험을 마친 분들의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도 법무부 사이트에 문제가 올라오자마자 새벽까지 간략하게 해설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사례형 문제의 특성상 출제의도와 다른 해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안에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로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시험을 마치고 발표날까지 하루에도 수십번씩 자가채점을 하면서 합격과 불합격의 경계선을 반복해서 넘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본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제가 순환별 출제하여 적중한 문제는 추후 별도 자료로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010-4094-2389

오픈카톡방 : 푸에테앰프랙티스(참여코드 PASSPASS)

jusdroit@hanmail.net

〈제1문의 1〉

〈 기초적 사실관계 〉

甲은 乙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丙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丙에게 상소 제기에 대한 특별수권을 부여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 계속 중 乙이 사망하자 甲은 乙의 상속인으로 乙의 자녀 A, B를 특정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한 후, 그 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다.

丙은 이러한 소송수계신청,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관하여 이의하지 않았고 제1심 법원 역시 위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甲의 각 청구를 일부씩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丙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이에 甲만이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는 기각되었고 상고 없이 상고기간이 도과되었다.

그런데 그 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乙에게 또 다른 상속인인 자녀 C가 있었는데 乙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C의 유일한 상속인으로는 자녀 D가 있다.

[※ 아래의 각 질문은 상호 무관하며 독립적임]

〈 문제 〉

1. 甲은 D의 상속분을 고려하여 A, B에 대한 실제 상속분에 상응하도록 위 판결의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수정해 달라는 판결경정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20점)
2. 甲은 위 판결의 피고 당사자표시에 D를 추가하고, 주문과 이유에 D의 상속분을 반영해 달라는 판결경정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15점)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이 출제되었다. (판례는 피고 측 소송대리인도 항소를 제기한 사안인데, 출제된 문제는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출제되었다) 문제1의 경우에는 법원은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하고, 문제 2의 경우에는 법원은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서술하면 된다.

〈제1문의 2〉

甲은 乙을 상대로 2억 원의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채권자인 丙의 신청에 따라 위 대여금 채권 전체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인용되었고, 그 결정정본이 甲과 乙에게 각 송달되어 위 전부명령은 그대로 적법하게 확정되었다. 丙은 乙에 대하여 2억 원의 전부금 지급을

구하면서 위 대여금청구의 소에 적법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는데, 甲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 그러나 甲은 乙이 탈퇴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에 남아 있게 되었다.

제1심법원은 甲의 乙에 대한 청구를 전부기각하고 丙의 乙에 대한 청구금액 중 1억 5,000만 원을 일부 인용하였다. 乙과 丙은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甲은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甲은 乙과 丙이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다투는 것을 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신의 권리를 적법하게 실현하지 못한 것이 억울하였다. 甲은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고자 한다. 甲은 변론할 수 있는가? (15점)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이 출제되었다. 丙의 승계참가는 적법하다는 점, 丙과 甲의 공동소송형태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관계라는 점,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민소법 제67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서술하고, 이에 따라 甲은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고 서술하면 된다.

〈제1문의 3〉

甲은 乙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甲은 2021. 10. 22. 乙을 상대로 위 4,000만 원에 대한 대여금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 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2022. 2. 2.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후 甲은 위 대여금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고, 丙은 2023. 11. 23. 乙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후소’ 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2024. 1. 31.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乙은 이 사건 전소 및 이 사건 후소에 대하여 각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후소의 항소심법원은 乙의 각 추완항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계속의 중복상태를 해소하도록 “丙은 이 사건 후소를 취하하고, 乙은 소 취하에 동의한다.” 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2025. 1. 10. 그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丙은 2025. 1. 9. 이 사건 전소의 항소심에서 甲으로부터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이후 甲은 탈퇴하였다. 이 사건 전소의 항소심법원은 2025. 3. 7. 변론을 종결하고 丙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乙은 丙의 청구 인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25점)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이 출제되었다. 문제에서 “乙의 각 추완항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계속의 중복상태를 해소하도록” 이라고 출제되었으므로, 재소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서술하고, 이에 따라 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서술하면 된다.

〈제1문의 4〉

甲은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유명 작가 A가 그린 X 그림의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판결 확정 후 그 판결이 집행불능이 되는 것을 대비하여 손해배상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인도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전부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甲만이 기각된 청구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법원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항소를 인용하여 손해배상청구만을 전부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乙만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항소심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전부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甲의 인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모두 이유 없다는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두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가? (25점)

집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병합의 형태는 단순병합이라는 점,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항소심에 전부 이심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손해배상청구 부분이라는 점, 항소심의 심리대상이 되지 않은 인도청구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므로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인도청구 부분을 재판할 수 없다는 점을 서술하고, 이에 따라 인도청구 부분은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기각할 수 있다고 서술하면 된다.

〈제1문의 5〉

〈 사실관계 〉

乙은 2020. 8. 22. 甲으로부터 X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매월 10일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20. 10. 10.부터 2022. 10. 9.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乙은 甲에게 약정대로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고 X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다가 2022. 7.경 甲에게 위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유효하게 표시하면서 X 주택을 인도할 테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乙은 위 임대차기간 만료 전은 물론 만료 후에도 甲이 X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을 보여 주는 것에 협조하는 등 임차목적물 인도의무를 이행제공 하였으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결국 X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다.

乙의 채권자인 丙의 신청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억 5,000만 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인용되었고, 그 결정정본이 2023. 7. 15. 甲과 乙에게 각 송달되어 위 전부명령은 그대로 적법하게 확정되었다. 乙은 위 전부명령 발령 사실을 알게 된 후인 2023. 8. 10.부터 甲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丙은 甲을 상대로 전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甲은 丙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무변론판결을 2023. 11. 9.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3. 12. 9.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전소 판결’ 이라 한다).

한편 甲은 2023. 10.경부터 12.경까지 乙에게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X 주택을 보여 주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그러나 乙은 甲에게 전부명령으로 인해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며 2023. 11. 10.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X 주택을 보여 주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X 주택의 인도도 거절하였다.

乙은 X 주택에 계속 거주하다가 2025. 8. 9. 甲에게 X 주택을 인도하였다.

< 문제 >

甲은 2025. 10. 1. 丙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소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 ① 乙의 X 주택 인도의무와 甲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전체 지연손해금 중 乙의 인도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이 중지된 2023. 11. 10.부터 2025. 8. 9.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기초한 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된 차임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2023. 8. 10.부터 2025. 8. 9.까지의 24개월분 미지급 차임 2,400만 원 부분에 기초한 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에 대하여 丙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 ① 전소 판결 전에 이미 甲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乙의 X 주택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었으므로, 甲이 전소 판결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전소 판결 후에 생긴 사유라고 할 수 없어 이는 기판력에 저촉된다.
- ② 甲이 공제를 주장하는 차임은 모두 전부명령의 결정정본이 송달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 차임 공제 주장으로 전부채권자인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설령 공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23. 8. 10.부터 전소 판결 전까지 미지급된 차임 부분에 관하여는 기판력에 의하여 더 이상 공제 주장을 할 수 없다.

丙의 위 주장을 참작하여, 甲의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시오. (30점)

청구이의소송의 사유(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관련하여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이 출제되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본소), 2022다302503(반소) 판결에 따라 청구이의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甲의 ① 주장은 타당하다(丙의 ①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서술하면 된다. 공제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1398 판결에 따라 연체차임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이의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甲의 ② 주장은 타당하다(丙의 ③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서술하면 된다. (이와 관련하여 丙의 ② 주장은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에 근거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서술하면 된다)

<제1문의 6>

< 사실관계 >

A 회사는 2017. 12. 11. 乙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18. 12. 1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A 회사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이후 乙이 A 회사로부터 위 차용금을 일부 변제받거나 상환을 약속받은 바는 없었다(이하 각 차용금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대

하여는 판단하지 말 것).

이후 A 회사는 甲으로부터 2022. 1. 11. 1억 2,500만 원을, 丙으로부터 2023. 1. 11. 1억 2,500만 원을 추가로 각 차용하였는데, A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무런 변제를 하지 못하자, 丙은 A 회사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2025. 7.경 적법하게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이 2025. 7. 2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여 X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 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2025. 11. 2. 자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억 원 중 1순위로 X 부동산에 관한 당해세 교부권자 B에게 5,000만 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乙에게 1억 원을, 3순위로 甲과 丙에게 각 2,500만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甲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乙의 A 회사에 대한 채권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면서 A 회사를 대위하여 A 회사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였다. 甲은 2025. 11. 6.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甲의 배당이의의 소는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소임을 전제로 할 것).

< 문제 >

甲은 위 배당이의의 소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 ① 乙의 A 회사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 ② A 회사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甲이 A 회사를 대위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효완성을 주장한 이상 乙은 배당받을 수 없으므로, 乙의 배당금은 甲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위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시오. (20점)

甲의 ① 주장과 관련해서는 A회사의 채무는 상사채무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아니므로 타당하다고 서술하면 된다. 甲의 ② 주장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에 따라 타당하다고 서술하면 된다.

〈제2문의 1〉

〈 기초적 사실관계 〉

乙은 2012. 5. 1. 甲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또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 라고 한다)하면서 1년 뒤인 2013. 5. 1.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甲, 乙 및 乙의 모친 丙, 乙의 동생 丁이 상호 협의하여 丙 소유의 X 토지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물적담보로 제공하고, 丁이 인적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3. 6. 1. 丙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甲, 채무자를 乙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었고, 丁은 같은 날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丙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丁의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1. 甲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6. 1. 丙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소송’ 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전액이 변제되지 않는 아니하였고, 甲은 잔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2024. 4. 28. X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2024. 5. 1. X 토지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2024. 5. 2. 乙과 丙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그러자 丙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10년의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16. 甲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송’ 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송 심리 결과 乙이 甲에게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 상사시효,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말 것]

〈 문제 〉

1. 이 사건 소송에서 丙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甲은 ‘자신이 이미 선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같은 甲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0점)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에 채권자가 응소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33364 판결 등에 근거하여,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서술하면 된다.

2. 이 사건 소송에서 丙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甲은 ‘乙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중 일부를 계속 변제하였고, 2024. 4. 28. 자신이 X 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2024. 4. 28.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丙은

‘X 토지에 대한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乙에 대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같은 甲의 주장과 丙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0점)

(1) 甲의 “乙이 일부를 계속 변제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은 주채무자의 채무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므로 타당하다는 점을 서술하면 된다.

(2) 甲의 “경매를 신청하여 개시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과 丙의 주장의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경매개시결정이 주채무자인 乙에게도 적법하게 송달되었기 때문에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26097 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甲의 주장은 타당하고 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서술하면 된다.

〈제2문의 2〉

〈 사실관계 〉

甲은 자기 소유 X 토지를 방치하고 있었다. 丁은 2020년경부터 X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으며, 2021. 2. 1. X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관련된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乙은 2022. 2. 1. 丁과 X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9,000만 원은 2022. 8. 1. 각 지급하고, 丁으로부터 계약 당일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X 토지의 인도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乙은 계약 당일 丁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丁으로부터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X 토지를 인도받았다. 이후 乙은 2022. 8. 1. 丁에게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乙은 2022. 11. 1. 3,000만 원을 투입하여 X 토지를 상업용지로 개발한 다음 2023. 12. 1. 그 전부를 부지로 하는 상가 Y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乙의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Y 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2024. 4. 1. 丙이 Y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甲은 2024. 12. 1.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X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하 ‘제1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乙은 2025. 2. 1. 甲을 상대로 상업용지 개발비용 3,000만 원 상당의 유익비를 점유자로서 상환청구하는 별도의 소(이하 ‘제2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 乙이 X 토지를 상업용지로 개발하여 X 토지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되었다는 점, 그 개발비용과 객관적 가치의 상승분이 3,000만 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 문제 〉

제1소송과 제2소송에 대한 법원의 각 판단과 그 근거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5점)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9815 판결을 기초로 출제된 문제이다. 제1소송과 관련해서는 甲이 소유자이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인용된다는 점, 乙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토지의 점유자가 아니므로 인도청구는 기각된다는 점을 서술하면 된다. 제2소송과 관련해서는 乙이 토지의 점유를 이미 상실하였기 때문에 민법 제203조를 근거로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각된다는 점을 서술하면 된다.

〈제2문의 3〉

〈 사실관계 〉

甲과 乙은 2018. 11. 1. 丙으로부터 丙 소유의 X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240만 원(매월 1일 선지급), 임대차기간 2018. 11. 1.부터 2022. 10. 31.로 정하여 공동으로 임차하고 같은 날 X 토지를 인도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甲과 乙은 2019. 7. 1.부터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甲과 乙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X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2022. 11. 30. 丙에게 X 토지를 인도하였다.

丙은 甲과 乙이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9. 7.부터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월 차임 중 160만 원 부분을 甲에 대하여 매월마다 면제해 주면서 80만 원씩만 지급하라고 한 사실이 있다. 甲의 채권자 丁은 임대차계약 종료 직전 甲의 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정본이 甲과 丙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 차임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과 공휴일은 고려하지 말 것]

〈 문제 〉

乙은 2025. 12. 1. 丙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22. 11. 1.부터의 지연이자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丙은 ‘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에 대하여 甲의 채권자 丁 명의의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乙에게 지급할 수 없다. ② 연체한 차임채권 등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 ③ 또한 연체한 차임채권 등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제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공제한다’ 고 주장하며 다투었다. 위 ① 주장, ② 주장, ③ 주장에 대한 각 당부 판단을 포함하고 예상되는 가능한 항변(들)을 고려하여 어떤 판결이 예상되는지 서술하시오(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전부 인용/청구 일부 인용 - 일부 인용의 경우 인용 범위를 특정할 것). (30점)

(1) ① 주장과 관련하여

丙의 보증금반환채무와 관련하여 甲과 乙의 보증금반환채권의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 대한 특별한 사실관계가 없기 때문에 불가분채권으로 보면 된다. 따라서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을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고 서술하면 된다.

(2) ②·③ 주장과 관련하여

사용대차에서 공동차주의 연대채무를 규정한 민법 제616조가 임대차에도 준용된다(민법 제654조). 따라서 임대차에서 공동임차인은 연대채무를 부담하므로, 차임채무와 관련하여 甲과 乙은 연대채무자가 된다. 丙이 甲에게 일부면제를 해 준 행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16435 판결에 따라, 丙이 甲에게 160만 원을 면제해 준 것은 乙에게 40만 원의 절대효가 미친다(甲과 乙의 내부적 부담부분은 민법 제424조에 따라 균등추정 됨). 따라서 丙은 乙에게 연체차임을 월 200만 원만 청구할 수 있다. 연체기간은 2019. 7.부터 2022. 10.까지(임대차 종료 이후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고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 종료이후 변제할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이 없음) 총 40개 월이므로 丙이 乙에게 청

구할 수 있는 연체차임은 8천만 원이 된다. 월 차임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마지막 월 차임의 지급시기가 2022. 10. 1.이므로 乙의 소제기일인 2025. 12. 1.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연체차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는 할 수 없지만 공제는 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에 따라 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지만 ③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서술하면 된다.

(3) 2022. 11. 1.부터의 지연이자와 관련하여

甲과 乙은 2022. 11. 30. 丙에게 X 토지를 인도하였다. 따라서 丙의 보증금반환채무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한 2022. 12. 1.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4) 결론

丙은 乙에게 4억 2천 및 이에 대한 202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 일부인용 판결이 예상된다.

〈제2문의 4〉

〈 기초적 사실관계 〉

A는 2014. 2. 5.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는 2000. 1. 21. 사망하였다. A의 자녀로는 甲, 乙, 丙이 있으며, A의 상속재산으로는 X 토지가 있다.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임]

〈 추가적 사실관계 1 〉

甲은 2013. 4. 5. 사망하였고, 乙은 2014. 4. 10. A에 대한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다. A가 사망하기 전부터 X 토지를 사용하던 丙은 2014. 5. 7. X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甲의 자녀인 丁과 乙의 자녀인 戊는 丙이 자신의 명의로 X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였음을 2023. 10. 10. 알게 되었고, 2024. 3. 12. 丙을 상대로 각자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X 토지의 지분을 이전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 문제 〉

1. 丁과 戊의 丙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결론과 논거를 서술하시오. (15점)

丁의 丙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에 대하여는 “甲이 A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甲의 상속인인 丁은 대습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丁의 丙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는 제척기간도 준수하였으므로 인용된다.” 는 내용을 서술하면 된다.

戊의 丙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에 대하여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민법 제1043조를 근거로, 또한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닌 점을 근거로 戊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戊의 청구는 기각된다.” 는 내용을 서술하면 된다.

< 추가적 사실관계 2 >

己는 A의 혼인 외의 자녀인데, 2024. 8. 1. 자신의 생모(生母)로부터 A가 사망한 사실 및 A가 자신의 생부(生父)라는 사실을 처음 듣게 되었다. 그러자 己는 곧바로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이미 2014. 7. 1. X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친 甲, 乙, 丙을 상대로 2025. 12. 10.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였다.

< 문제 >

2. 己의 甲, 乙, 丙에 대한 가액지급청구의 결론과 논거를 서술하시오. (10점)

상속재산의 분할 이후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판결을 받은 자는 동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민법 제1014조에 의한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己의 가액지급청구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999조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단순위헌 결정(2021헌마1588)이 있었다는 점, 따라서 침해행위가 있는 날인 2014. 7. 1.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지만, 침해를 안 날인 인지판결 확정일(2006므2757 참조)부터는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가액지급청구는 인용된다는 점을 서술하면 된다.

< 추가적 사실관계 3 >

甲, 乙, 丙은 2019. 2. 5.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X 토지를 甲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X 토지는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B가 사용하고 있었고, A의 사망 후 월 30만 원(매월 10일 지급)의 차임을 丙에게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甲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근거로 X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상속개시 시부터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2024. 1. 15. 丙을 상대로 A가 사망한 때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시까지 수령한 차임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말 것]

< 문제 >

3. 甲의 丙에 대한 차임반환청구의 결론(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전부 인용/청구 일부 인용 - 일부 인용의 경우 인용 범위를 특정할 것)과 논거를 서술하시오. (10점)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판결을 근거로 출제된 문제이다. 따라서 “상속재산 과실은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하므로, 이 범위에서 일부 인용된다는 점을 서술하면 된다.

〈제3문의 1〉

甲 주식회사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는 비상장회사이다. A, B, C는 甲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55%, 25%, 20%를 각각 보유하고 있고, 회사의 운영 및 판로 개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0. 1.경 A, B, C 간에 아래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었다.

〈주주 간 계약〉 (일부)

제7조 ① 회사의 이사회는 총 5명으로 구성하며 A가 3명, B와 C가 각각 1명씩을 지정한다.

②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은 제1항의 약정에 따라 행사하여야 한다.

제8조 회사가 중요자산을 매각할 때는 B와 C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B와 C는 A에게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매수청구가 도달한 시점에 B, C와 A 사이에 매수청구 대상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 아래의 각 질문은 상호 무관하며 독립적임]

1. 2025. 8.경 임시주주총회에서 A는 다른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여 이사의 수가 7명으로 변경되었다. 이 경우 ① 〈주주 간 계약〉 제7조의 유효성, ②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③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서술하시오. (15점)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에 기초하여 출제된 문제이다. ① 제7조는 주주 간에서는 유효하다는 점, ② 약정을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하다는 점, ③ A가 추가로 선임한 2명의 이사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구할 수 있다는 점, 주주간 계약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서술하면 된다.

2. 甲 회사의 대표이사 X는 2020. 10.경 이사회 결의 없이 B와 C의 사전 서면동의도 받지 않고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를 비상장회사인 乙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1) 甲 회사의 감사 Y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제조설비 양도를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타당한가? (10점)

상법상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 결의로 한다(제393조). 甲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 설비를 乙 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은 제393조를 위반한 전단적 대표행위가 된다. 제393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인 乙 주식회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판결)이 인정되면 무효라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서술하면 된다.

- (2) 2025. 12.경 B가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A에게 당시 보유 중이던 甲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이 경우 A는 해당 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10점)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을 기초로 출제된 문제이다. 따라서 의무불이행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술하면 된다.

3. 甲 회사는 경영실적과 재무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 2024년에는 50억 원 가량의 누적손실을 보았고, 매출액 규모에 비해 대표이사의 급여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甲 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에게 종전의 5배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을 결의하였고, 2025. 10.경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B, 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위 지급규정이 개정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퇴직을 앞둔 대표이사 X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그 후 X는 이사직에서 퇴직하였고, 위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① 해당 퇴직금 지급은 유효한지, ② 甲 회사는 X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15점)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에 기초하여 출제된 문제이다. ①과 관련해서는 개정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내용은 당시 甲 주식회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이므로 이에 근거한 퇴직금 지급은 유효하지 않다고 서술하면 된다. ②와 관련해서는 대표이사 X가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와 선관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를 위반하였다는 점, 이를 이유로 甲 회사는 제399조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서술하면 된다.

〈제3문의 2〉

창고업을 하는 상인 甲은 모피 판매업을 하는 상인 乙과 3개월간 ‘밍크코트’ 100벌을 보관하고 추후 보관료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乙의 요청으로 위 계약과 같은 내용의 창고증권을 교부하였는데, 실제로 乙로부터 수령한 밍크코트는 80벌뿐이었다. 이후 乙은 자신의 영업장소가 협소하여 乙 소유의 ‘공장용 의류세탁 기계’를 甲의 창고에 일시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을 甲과 체결하고 甲에게 위 기계를 인도하였다. 현재 乙은 甲에게 위 공장용 의류세탁 기계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다. 한편 甲은 乙의 요청으로 ‘보험계약자 甲, 피보험자 乙, 보험목적물 밍크코트, 보험가액 5억 원, 보험금액 3억 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X 보험회사와 체결하였다.

[※ 아래의 각 질문은 상호 무관하며 독립적임]

1. 乙이 보관기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밍크코트를 가져가지 않을 경우 甲은 보관료 5,000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甲이 보관료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乙이 계속하여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고 밍크코트의 수령도 거부할 경우 甲이 「상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20점)

(1)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62조 제1항). 따라서 보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출고 전이라도 甲은 乙에게 제162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서술하면 된다. (2) 甲이 상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하여, (a) 보관료를 받기 위한 조치로는 ‘공장용 의류세탁 기계’에 대하여 상사일반유치권(상법 제58조)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b) 밍크코트의 수령을 거부하는 점에 대한 조치로는 ‘공탁권 및 경매권(상법 제165조, 제67조)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서술하면 된다.

2. 丙이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후, 乙과 丙이 각각 甲을 상대로 밍크코트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甲은 누구에게 밍크코트 몇 벌을 반환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가? (10점)

상법 제157조에서 화물상환증에 관한 조문을 창고증권에 준용한다는 점,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 운송물에 대한 권리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에게 귀속되므로,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임치물에 대한 권리는 창고증권의 소지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상법 제131조 제2항에 따라 창고업자는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창고증권에 적힌 바에 따라 책임을 진다는 점을 근거로 甲은 丙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서술하면 된다.

3. 甲의 경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에 보관 중이던 밍크코트가 모두 타 버린 경우, ① 보험계약자 甲이 아닌 피보험자 乙이 X 회사에 보험금액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② X 회사가 乙에게 보험금액 3억 원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인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③ 행사 가능한 경우 그 금액은 얼마인지 서술하시오. (「상법」 외 다른 법은 고려하지 아니함) (20점)

- ①과 관련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제639조)이 근거가 된다는 점을 서술하면 된다.
- ②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등을 근거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도 제3자에 해당하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서술하면 된다.
- ③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차액설)을 기초로 해결하면 된다. 보험가액이 5억 원이므로 甲이 부담하는 손해배상 액수가 5억 원이 된다. 따라서 乙이 먼저 2억 원(5억 원 - 이미 수령한 보험금액 3억 원)을 행사하고, X 회사가 나머지 3억 원(5억 원 - 乙이 행사한 2억 원)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X 회사가 행사 가능한 금액은 3억 원이라고 서술하면 된다.